

감 정 평 가 서

APPRAISAL REPORT

건 명: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64-16
제6층 제1호 外 2개호

의뢰인: 방촌신용협동조합

감정평가서번호: 27-240709-5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감정평가법인 태백 영남지사

(구분건물)감정평가표

Page : 1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조 규 만

조 규 만



(주)감정평가법인 태백 영남지사 지사장 조규만

(서명또는인)



감정평가액	일십일억일천만원정(W1,110,000,000.-)					
의뢰인	방촌신용협동조합		감정평가 목 적	신탁자산 구매		
제출처	방촌신용협동조합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감정평가 조 건	-		
목록표시 근 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시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채무자	-		2024.07.10	2024.07.10	2024.07.11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구분건물	3개호	구분건물	3개호	-	1,110,000,000
	이	하	여	백		
	합 계					₩1,110,000,000
심사 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 사 자 : 감 정 평 가 사 하 동 현					

하 동 현

(인)

(주)감정평가법인 태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소재 '공단동 행정복지센터'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제6층 제1호 外 2개호'로서, 「방촌신용협동조합」에서 의뢰된 신탁자산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가. 기준가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음. 시장가치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함.

나.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본건 감정평가시 의뢰인으로부터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제시 받지 아니하였음.

3.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가. 근거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 관련 제 규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따라 감정평가 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 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

본건 감정평가시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주된 방법으로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대상물건의 특성상 원가법 적용이 적절하지 않고, 수익환원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수익과 비용 및 환원이율의 변동 가능성 또는 불확실성에 따른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유사한 임대사례의 포착이 어려워 적용이 곤란함. 따라서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동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른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해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는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음.

라. 일괄·구분·부분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구분소유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거래되는 관행이 있는 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일괄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4. 기준시점 등

가.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인 기준시점은 의뢰인으로부터 별도의 제시가 없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4년 07월 10일로 함.

나.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실지조사(2024년 07월 10일)를 통하여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확인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대상물건의 확정

소재지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64-16								
건물명 및 층·호수	제6층 제1호 外 2개호								
건물의 개 황	지목	용도지역		대지면적(㎡)		연면적(㎡)		층수(지하/지상)	
	대	준공업		1,000.0		4,546.58		1/7	
	주구조		주용도		사용승인일		단지규모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1991.01.02		동수	세대/호	
설비현황	난방설비	냉방설비	위생·급배수설비	소화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기타설비	
	-	-	○	○	-	○	-	-	
일련번호	층/호수	면적(㎡)			소유권 대지권 (㎡)	용도			
		전유	공용	합계					
가)	6/1	199.16	80.04	279.64	61.408	사무실			
나)	6/2	272.93	109.68	382.61	84.155	여관			
다)	7/1	413.77	161.95	575.72	126.64	여관			
합 계		886.30	351.67	1,237.97	272.203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그 밖의 사항

가. 물적 동일성 등 종합 의견

물적 동일성	제반 현황으로 판단할 때 물적 동일성 인정됨.
안정성, 환가성, 시장성, 주위환경 및 관리시 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본건의 이용상황 및 주위환경 등으로 판단할 때 시장성 및 안정성, 환가성은 보통시됨.

나. 기타 참고사항

- 대상물건의 위치확인은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 및 출입구 표시부분으로 확인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

가. 비교사례의 선정

1) 감정평가사례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화시스템 등)

기호	소재지	동/층/호수	전유면적 (㎡)	이용상황	감정평가 목적	기준시점	감정평가액(원)
						사용승인일	(원/전유면적㎡)
㉠	공단동 262	낙동상가 -/6/605	117.77	상업용	담보	2023.07.17	110,000,000
						1998.12.07	(약 934,000)
㉡	공단동 260-10	구미한라 시그마밸리 -/5/508	308.2	공장(지식 산업센터)	담보	2024.03.11	372,000,000
						2011.07.06	(약 1,210,000)

2)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동/층/호수	전유면적 (㎡)	이용상황	거래시점 (계약일 기준)	거래가액(원)	출처
					사용승인일	(원/전유면적㎡)	
㉠	공단동 260-10	구미한라 시그마밸리 -/6/614	68.84	공장(지식 산업센터)	2024.05.01	100,000,000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2011.07.06	(약 1,450,000)	
㉡	공단동 260-10	구미한라 시그마밸리 -/8/817	68.84	공장(지식 산업센터)	2024.02.20	118,000,000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2011.07.06	(약 1,71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인근지역 유사부동산의 거래가격수준 및 경매낙찰가율

■ 거래가격수준

용도	거래가격수준	조사처
사무실	전유면적당: 900,000원/㎡ 수준	인근 부동산
여관	전유면적당: 1,300,000원/㎡ 수준	인근 부동산

4) 비교사례의 선정

인근지역 내 소재하는 구분건물 중 본건과 층별 효용도·위치별 효용도 등 제반 물적유사성이 높아 비교가능성이 높은 실거래사례를 중심으로 선정하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 중에서 인근지역의 가격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을 비교사례로 선정함.

기호	소재지	동/층/호수	전유면적 (㎡)	이용상황	거래시점 (계약일 기준)	거래가액(원)	출처
					사용승인일	(원/전유면적㎡)	
㉠	공단동 260-10	구미한라 시그마 밸리 -/6/614	68.84	공장(지식 산업센터)	2024.05.01	100,000,000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2011.07.06	(약 1,450,000)	

나. 사정보정

결정 의견	선정된 비교사례에는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별도의 사정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음.
사정보정 비교치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시점수정

■ 일련번호 가~다)/비교사례 ㉠

대상물건은 구분건물(근린생활시설)로서, 한국부동산원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상업용 부동산 지역별 자본수익률표(경북 구미, 집합상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치를 산정함.

1) 자본수익률 산정 (2024.05.01~2024.07.10)

가) 자본수익률

년 도	분 기	자 본 수 익 률
2024	1	-0.13
2024	2	-
2024	3	-

나) 산정

$$(1-0.0013*61/91)*(1-0.0013*10/91) \approx 0.99899$$

※ 기준시점 현재 지수가 발표되지 않아, 최종 발표(2024년 1분기)를 기준으로 시점 수정치를 산출하였음.

2) 시점수정치의 결정

상기의 지수로 결정하였음(0.99899).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라. 가치형성요인 비교

■ 상업용

조 건	항 목	비교 사례㉠	일련번호 가)	비 고
단지 외부요인	고객 유동성과의 적합성,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대중교통의 편의성(지하철, 버스정류장), 배후지의 크기, 상가의 성숙도, 차량이용의 편의성(가로의 폭, 구조 등) 등	1.00	0.77	고객 유동성과의 적합 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등에서 열세함.
단지 내부요인	단지내 주차의 편리성, 건물전체의 공실률, 건물 관리상태 및 각종 설비의 유무, 건물전체의 임대료 수준 및 임대비율,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건물의 규모 및 최고층수 등	1.00	0.60	건물의 노후도, 관리상 태 및 각종 설비의 유무 등에서 열세함.
호별 요인	층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주출입구와의 거리,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와의 거리, 향별 효용,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등	1.00	1.00	유사함.
기타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1.00	유사함.
개 별 요 인 비 교 치		1.000	0.462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상업용

조 건	항 목	비교 사례㉠	일련번호 나,다)	비 고
단지 외부요인	고객 유동성과의 적합성,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대중교통의 편의성(지하철, 버스정류장), 배후지의 크기, 상가의 성숙도, 차량이용의 편의성(가로의 폭, 구조 등) 등	1.00	0.77	고객 유동성과의 적합성, 차량이용의 편의성 등에서 열세함.
단지 내부요인	단지내 주차의 편리성, 건물전체의 공실률, 건물 관리상태 및 각종 설비의 유무, 건물전체의 임대료 수준 및 임대비율,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건물의 규모 및 최고층수 등	1.00	1.30	건물의 노후도 등에서 열세하나, 각종 설비의 유무(여관) 등에서 우세함.
호별 요인	층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주출입구와의 거리,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와의 거리, 향별 효용,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등	1.00	1.00	유사함.
기타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1.00	유사함.
개 별 요 인 비 교 치		1.000	1.001	-

마. 산정단가의 결정

일련 번호	비교사례단가 (원/전유㎡)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산정단가 (원/전유면적㎡)	적용단가 (원/전유㎡)
가)	1,450,000	1.000	0.99899	0.462	669,223	669,000
나,다)	1,450,000	1.000	0.99899	1.001	1,449,984	1,44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일련 번호	층/호수	전유면적 (㎡)	소유권대지권 (㎡)	적용단가 (원/전유㎡)	산출금액 (원)	시산가액 (원)
가)	6/1	199.16	61.408	669,000	133,238,040	130,000,000
나)	6/2	272.93	84.155	1,440,000	393,019,200	390,000,000
다)	7/1	413.77	126.64	1,440,000	595,828,800	590,000,000
합 계		886.3	272.203	-	-	1,110,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Ⅲ. 감정평가액 결정 및 의견

1. 감정평가액 결정

감정평가액(원)	1,110,000,000원
----------	----------------

2.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상기 참고가격 자료(인근 탐문조사에 의한 가격수준, 평가사례, 경매시장 추이 등)를 종합 참작하여 분석한 결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안정성과 환가성 등을 고려한 비준가액으로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끝.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도로명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186-17	264-16	업무시설,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주차장및 전기기계실 (내주차장 480.38㎡ 관리 사무소 12.9㎡)	지하	705.83			
			소매점	1층	560.25			
			대중 음식점	2층	560.25			
			사무실	3층	560.25			
			사무실	4층	560.25			
			사무실	5층	560.25			
			당구장 및 숙박시설 (내당구장 198.9㎡)	6층	560.25			
			숙박시설	7층	479.25			
			대	준공업지역	1,000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가			당구장	(내) 철근콘크리트조 제6층 제1호	199.16	199.16	130,000,000	비준가액 실 제:사무실	
				소유권	61.408				
				1. ----- 대지권	----- 1,000	61.408			
나			여관	(내) 철근콘크리트조 제6층 제2호	272.93	272.93	390,000,000	비준가액	
				소유권	84.155				
				1. ----- 대지권	----- 1,000	84.155			
다			여관	(내) 철근콘크리트조 제7층	413.77	413.77	590,000,000	비준가액	
				소유권	126.64				
				1. ----- 대지권	----- 1,000	126.64			
합 계									₩1,110,000,000.-
			이	하	여	백			

구분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위치 및 부근의 상 황	본건은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소재 '공단동 행정복지센터'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제6층 제1호 외 2개호'로서, 주위는 공장, 노선상가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 제반 입지여건 무난한 편임.
교 통 상 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건 물 의 구 조 및 이 용 상 황	■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건물 내 제6층 제1호 외 2개호로서, - 외벽 : 치장타일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 내벽 : 벽지도배 및 내부 인테리어 등 - 바닥 : 우드름 및 타일깔기 등 - 창호 : 새시 이중창호임. ■ 이용상황 가) : 사무실임. 나) : 여관임. 다) : 여관임.
냉난방 설비 등 기 타 부 대 설 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 설비, 승강기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토 지 형 상 및 이 용 상 태 와 인 접 도 로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동측으로 폭 약 6M의 포장도로와 접함.
토 지 이 용 계 획 및 공 법 상 태 제 한 상 태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지원시설단지),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전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재생사업지구(구미국가1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원시설구역(2015-07-08)<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 부 와 의 차 이	공부상 건물 가)는 '당구장'이나 실제 '사무실'임.
임 대 관 계 및 기 타	대상물건 임대관계는 미상임.

광역위치도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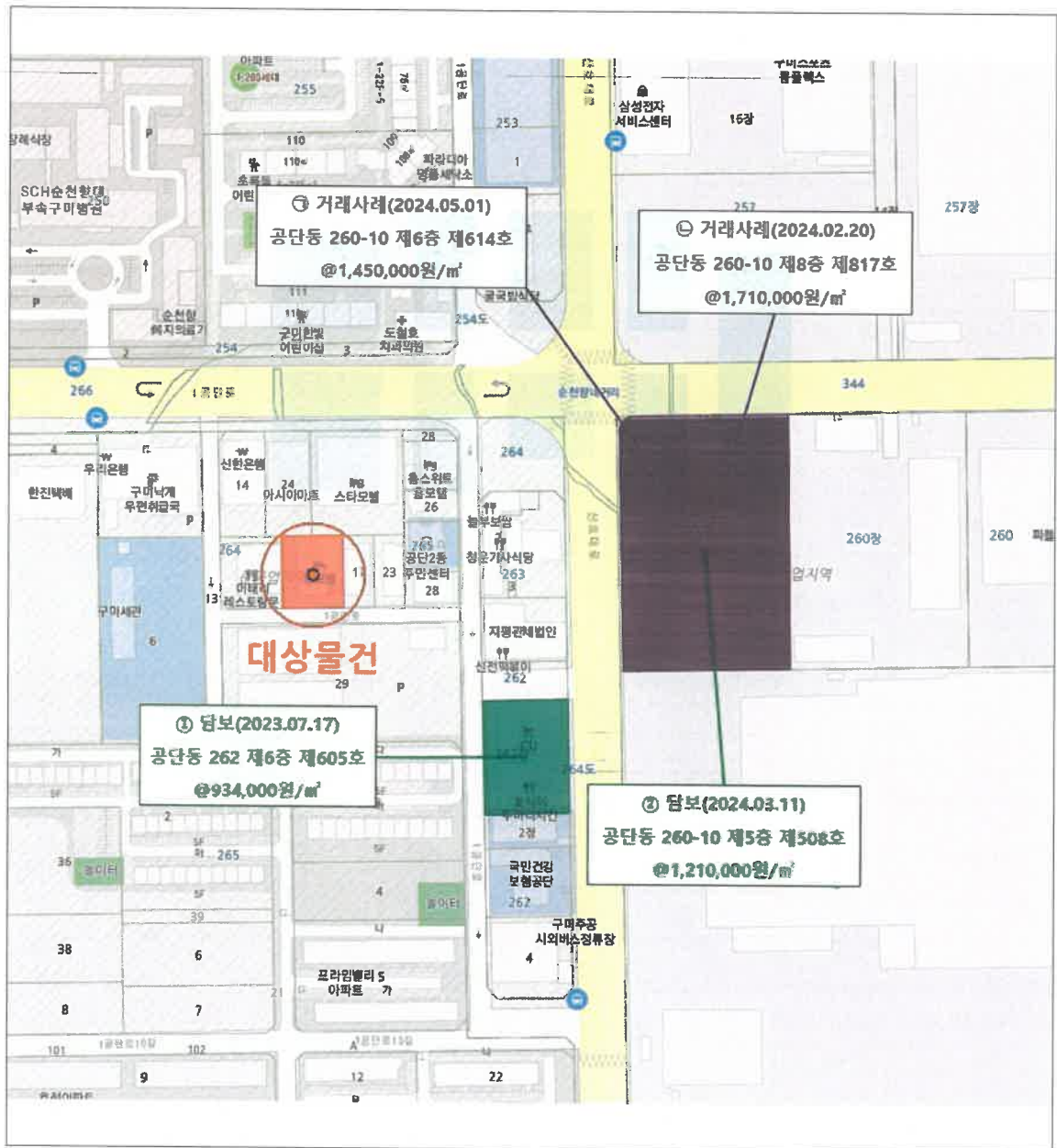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65-16 제6층 제1호 외



상 세 위 치 도

소재지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65-16 제6층 제1호 외



호 별 배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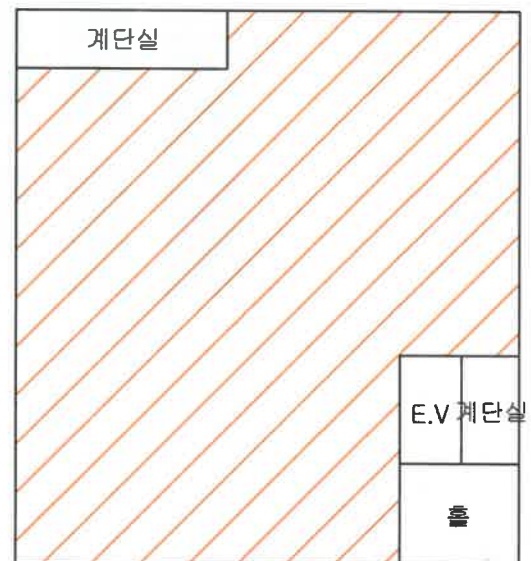


S=No Scale

[호 별 배 치 도]



<6층>



<7층>

[본 건]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64-16 6층 1호외 2개호]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



본건 전경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



본건 내부

사 진 용 지



본건 내부



본건 내부

사 진 용 지



본건 내부



본건 내부

사 진 용 지



본건 내부



본건 내부